

1. 지적유형 : 부동산 소유한도 초과

2. 제재대상사실

- 기존 본사 사옥 신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부동산 소유한도 초과에 대하여 예외 승인(1995.9.20.)을 받아 보험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한도(총자산의 15%) 이내가 될 때까지 일체의 부동산 신규취득이 금지되어 있는데도,

2008.5.23. 본사 사옥용 부동산(취득가액 1,770억원)을 신규 취득하고, 2008.6.16. 기존 본사 사옥(장부가액 2,143억원)을 매각함으로써 2008.5.23.~6.15. 기간 중(24일간) 부동산 소유액이 3,994 억원으로 직전분기말 총자산 대비 30.3%로 부동산 소유 한도를 13.4%p 초과한 사실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과태료 750만원 부과
임 원	주의적경고 : 1명
직 원	-

< 관련법규 >

1. 「보험업법」 제106조(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)
2. 「보험업법시행령」 제50조(자산운용의 비율)

<붙임>

과태료 산정내역

1. 부과근거

「보험업법」 제209조(과태료) 제1항 제5호

- 「보험업법」 제106조(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등)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의 소유가 총자산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2. 부과기준

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

위반결과 \ 동기	고의	과실
중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75%
보통	법정최고금액의 75%	법정최고금액의 50%
경미	법정최고금액의 50%	법정최고금액의 25%

- 중대 : 사회경제적 물의야기, 금융기관 손실초래, 건전금융질서 저해
- 보통 : 중대,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경미 : 단순법규 위반 등

3. 부과금액 결정

1) 위반행위의 동기

- 「보험업법」 제106조(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등)에 의한 부동산 소유한도 초과사실 및 제107조(자산운용제한에 대한 예외)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예외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한화증권빌딩 매각일정에 따라 부동산을 신규 취득함으로써 보험업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므로 위반동기는 고의를 적용

2) 위반행위의 결과

- 위반결과가 사회·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하는 등의 중대한 경우가 아니고, 단순법규 위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통을 적용

3) 가중 또는 감경사유

- 해당사항 없음

4) 최종 부과금액

- 1천만원 × 75% = 750만원